

## 한·EU 동등성 인정 협정문(한국 측 서신)

2018.1.30.

María Angeles BENITEZ SALAS 부총국장님 귀하

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는 2014년 12월 19일에 서신을 통해 EU 유기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생산되고 가공된 가공식품은 한국 유기식품법의 요구사항과 최소한 동등한 생산·가공 관리 요건 및 기준에 따른 유기인증시스템에서 생산·가공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. 상세한 조건은 언급된 서신의 부속서 I에 규정되어 있습니다. 협정은 2015년 2월 1일 발효하였고, 3년 동안 유효했습니다.

그 이후로 양국은 협정 연정에 대해 논의해 왔습니다. 농림축산식품부는 협정이 적절하게 이행된 것으로 평가하며, 협정을 기한없이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합니다.

박수진

농업생명정책관,

농림축산식품부,

대한민국 세종시